

의안
번호

474호

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

검 토 보 고 서

운 영 위 원 회

2022년도 제1회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(안) 검토보고

2022. 04. 13.
전문위원 유 천 곤

1. 제안이유

-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예산규모 (성북구의회 사무국)

- 세출예산(총괄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안	기정예산안	증감	
			금 액	비율(%)
세 입	< 없 음 >			
세 출	4,872,136	4,850,840	△21,296	△0.44

- 세출예산 세부내역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추경예산안 (A)	기정예산안 (B)	비교증감 (A-B)
지방의회 운영 지원	2,337,278	2,315,982	△21,296
의회운영 내실화	2,167,142	2,145,846	
의회운영 기본경비 지원	430,307	409,011	
인건비(기간제근로자등보수)	85,785	64,489	

<성북구의회 사무국 세출예산안>

- 2022년 제1회 성북구의회 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8억 5천 만원 대비 약 2천 1백 여 만원이 증액된 48억 7천 2백 여 만원이며,
 - 세부적으로는 「지방의회 운영지원」 경비에서 총 2천 1백 여 만원이 증액된 것이고, 이는 속기 및 회의록 발간업무 보조를 위한 속기사로 기간제근로자 1명을 8개월간 채용하기 위한 경비임.

3. 검토내용

- ‘2022년도 제1회 성북구의회 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’을 검토한 결과, 증액된 2천 1백 여 만원은 속기 및 회의록 발간 등 의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속기사(기간제근로자) 1명을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예산으로 이번 예산안은 지방자치법」 제145조¹⁾의 규정에 의한 편성사유 및 요건에 타당하다고 사료됨.

1) 지방자치법 제145조(추가경정예산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